

2020년도 제1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8. 13.(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심장섭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16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578건(안전번호 제2020-92688호~93915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9268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설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92689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최근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반도'를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57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16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하여 사전에 이메일로 보내드렸음.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5쪽에 저작물명, 출판사명, 댓글 내용, 6쪽에 밴드명, 7쪽에 저작물명을 비식별 처리함.
- A 위원: 의결 안건 제1호 회의록은 저작물명, 출판사명, 댓글 내용, 밴드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위원, C 위원: 같은 생각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출판사명, 댓글 내용, 밴드명 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넷플릭스', '이십세기폭스코리아(주)', '영국 BBC one', '채널A', '미국 NBC', '일본 NTV', '미국 CBS', '일본 NHK', '월트디즈니컴퍼니', '미국TNT', '유니버설 픽처스', '미국 FOX', '(주)제이앤씨미디어그룹', '한글과컴퓨터', 'Adobe Systems Inc.', '(주)26컴퍼니', '유니버설픽처스', '(주)NEW, 'MBN'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A 위원, B 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4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57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92688호~93915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2688호는 실명의 권리자라고 주장하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소설 '♡♡, ♡♡ ♡ ♡♡'을 텍스트 파일로 2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 A 위원: 소설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네이버 검색창에서 해당 저작물을 직접 검색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우리나라 출판사 '♡♡♡ ♡♡♡♡♡ ♡♡'에서 2017. 11. 21.에 출간하였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1권당 3,200원에 구매하여 감상 가능함.

- A 위원: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네이버 시리즈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총 38 권임.

- A 위원: 네이버 시리즈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1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네이버 시리즈에 게시된 '인생, 다시 한 번!' 1화를 보여주면서)이북(e-book)으로 제공되고 있음.

- A 위원: 주로 대화 형태로 집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판매가격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9268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A 위원: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는 바임.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9268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9268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긴급 대응 저작물'임. 보호원은 현재 상영중 또는 상영예정인 영화 저작물이나 정식 공표예정인 음악저작물 등과 같이 불

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물을 '긴급 대응 저작물'로 지정해 최우선 조치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음. 보호원 내규인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 업무 처리 규칙"의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등에서 긴급 대응 저작물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화 '반도'는 2020. 7. 15. 개봉한 최신 국내 영화로 한반도를 점령한 좀비에 관한 내용임. 영화 '부산행'의 후속작으로 현재 박스오피스 1위임. 국내에서만 2020. 8. 7. 기준으로 약 360만 명이 해당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최근 해당 영화가 불법복제물로 제공되고 있어 보호원이 해당 영화를 '긴급 대응 저작물'로 지정하였고, 긴급 심의를 요청하였음.

(네이버 검색창에서 '영화 반도 해외 상영'을 직접 검색하여 보여주면서)영화 '반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음. 스포츠동아 신문 2020. 8. 4. '반도 아시아 8개국 박스오피스 400만 달러 돌파'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기사에서는 대만, 싱가포르, 라오스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 영화 '반도'가 박스오피스를 평정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국내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된 시점이 해외에서 상영하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함. 해외 영화관에서 불법 촬영되어 국내에 불법복제물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면서)네이버 밴드에서 심의대상 게시물을 MP4 파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보호원이 다운로드 받아 재생한 화면을 보면 사행성 사이트 URL이 워터마크로 표시되어 있음. 영어 자막을 제공하고 있어 해외에서 최초 불법 복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함.

- A 위원: '긴급 대응 저작물'은 민원인이 지정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선정하는 것임. (보호원 '불법복제물 등 업무처리규칙' 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 불법복제물 등 업무처리규칙 제3조 제1항은 “긴급 대응 저작물은 현재 상영중 또는 상영예정인 영화 저작물이나 정식 공표예정인 음악저작물 등과 같이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피해가 크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호원이 인정하는 저작물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A 위원: 긴급 대응 저작물에 선정되어 시정권고 조치되는데 까지 얼마나 소요되는지?
- 정현순 사무처장: 불법복제물을 모니터링하여 가장 빠르게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 A 위원: '긴급 대응 저작물', '중점 보호 저작물', '일반 보호 저작물'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 정현순 사무처장: 이전 저작권보호센터 시절에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notice and takedown)' 제도가 운영되어, 별 다른 심의도 없이 OSP에 불법복제물에 대해 알려주면(notice) 바로 삭제(takedown) 하였음.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행정절차이다 보니 OSP에 관련 문서도 보내야 해서 시간적 측면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음.
- A 위원: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notice and takedown)' 제도는 없어졌는지?

- 정현순 사무처장: 여전히 존재함. 현재 권리자가 자구 행위로 행사하고 있음.
- A 위원: 보호원이 할 수 있는 것인지?
- 정현순 사무처장: 저작권보호센터는 권리자에서 위임장을 받아 해당 제도를 운영하였음.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되면서 저작권법 133조 3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 조치하는 것으로 변하였음.
- A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긴급 심의'를 온라인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음. '긴급 대응 저작물'이 발생할 경우, 15명의 심의위원 중 해당 시간에 심의가 가능한 심의위원만 모여 안건을 처리하면 될 것 같음.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위원회 사무처에서도 유사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의위원님들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음. 그래서 고안해 낸 방법이, 예를 들어 오늘 영화 '반도'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오늘 또는 내일 심의 예정인 분과위원회의 안건 중에 상대적으로 덜 긴급한 안건을 빼고, 긴급한 안건을 대신 상정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 A 위원: 다른 심의는 언제 개최되는지?
- 정현순 사무처장: 주말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심

의가 개최되고 있음.

- A 위원: 매일 심의가 개최된다면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notice and takedown)' 제도는 필요 없어 보임. 1년 내내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 정현순 사무처장: 그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9268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근 개봉하여 극장에서 상영중인 영화 저작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임. 가결 의견임.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92689호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

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2690호~9391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SW 'Adobe illustrator CC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3097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Adobe illustrator CC 2020'을 20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저작권사는 'Adobe system inc.'임. 자동인증이 완료되었음을 미루어 볼 때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 체험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매월 24,000원에 이용 가능함.

(영화 '결백'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3106호는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결백'을 21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MP4 파일로 제공함. 신혜선, 배종옥 배우가 출연한 영화로 누적관객이 86만 명을 넘음. 2020. 6. 10. 개봉하였으며, '네이버 시리즈on'에서 구매하는 경우 7,000원에 이용 가능함. 최근 2주간 불법복제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영화임.

(영화 '#살아있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3284호는 네이버 밴드에서 영화 '#살아있다'를 제공한 사안임. 이 영화는 2020. 6. 8. 개봉하였고, 8. 13. 기준으로 극장 상영 중임. 유아인, 박신혜가 출연한 영화로 누적관객이 190만 명을 넘음. '네이버 시리즈on'에서 구매하는 경우 7,000원에 이용 가능함. 밴드명은 '♡

♡♡♡♡♡♡♡'이고, MP4 파일로 제공함. 멤버 수는 738명임.

(방송 '바퀴 달린 집'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93417호는 방송 '바퀴 달린 집'을 웹하드에서 9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7. 30.에 방영한 8화를 MP4 파일로 제공함. 바퀴 달린 집을 타고 전국을 유랑하면서, 소중한 이들을 초대해 하루를 살아보는 버라이어티 예능임. 2020. 6. 11. tvN에서 첫방송으로 2020. 8. 13. 현재 9화까지 방영중임. 성동일, 김희원, 여진구가 출연하였고, 최고 시청률은 5.1%임. '네이버 시리즈on'에서 대여하는 경우 1,650원에 이용 가능함.

(방송 '신박한 정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93488호는 방송 '신박한 정리'를 웹하드에서 10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7. 27.에 방영한 5화를 MP4 파일로 제공함. 나만의 공간인 집의 '집'의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에 행복을 더하는 노하우를 함께 나누는 예능 프로그램임. 2020. 6. 29. tvN에서 첫방송으로 2020. 8. 13. 현재 7화까지 방영중임. 신애라, 박나래, 윤균상이 출연하였고, 최고 시청률은 3.5%임. '네이버 시리즈on'에서 대여하는 경우 1,650원에 이용 가능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92690호~9391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B 위원, A 위원: 안건번호 제2020-92690호~ 93915호는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92690호~9391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92688호~9391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7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8. 20.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